

II. 제도정보

1. 수입통관정보

☐ 수입, 통관, 검역 절차 및 요건

☐ 통관 절차

< 통관 시 주의사항 >

- 잦은 물품파손 및 분실: 사우디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개 제3국 출신이 대부분. 이들은 물건을 소홀히 취급할 뿐 아니라 훔치는 사례도 많음. 현지 진출 가전업체의 경우 하역 시 파손 및 분실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재 반출 시 관세환급 불가능: 제도상으로는 재 반출 물품의 관세환급제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한 물품을 재 반출할 때 관세환급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실정
-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견본이라 할지라도 과세 통관되는 사례가 허다하며 양이 많은 견본의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상품 포장상자 또는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모두 덧칠한 이후에 통관시키므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포장상자나 상품 설명서를 제작, 동봉
- 종교관행이 최상위: 이슬람교의 금기사항을 위반하면 어떤 식으로든 제재. 돼지고기와 알코올이 포함된 식품이나 의약품은 물론 여성의 노출이 심한 그림이나 사진의 통관에 제재가 따르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 상품 디자인이나 무늬에 신을 모독하는 이미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

는 결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 제도상으로는 수출입 통관에 별다른 규제가 없으나 낙후된 행정 관행과 종교관행이 통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무역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

○ 수입 금지 품목

- 담배 류나 말, 홍콩에서 가공된 다이아몬드, 인조 진주 등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기업의 제품 역시 수입금지

- 각종 출판물 및 영상물, 특히 종교관련 서적과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등은 당국의 특별 수입허가가 필요. 또 위험성이 높은 13개 화학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슬람 교리에 위배되는 주류, 돈육, 의료목적 외의 마약류, 주류, 치안 목적 이외의 총기, 탄환, 무기 등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예외 경우도 법으로 규정, 제한하고 있음

- 의약품이나 건강용품 등의 수입에는 사우디 보건부(MOH)에서 규정한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나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음

- 자국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수입제한 및 20% 보호관세부과 등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아래와 같은 종교, 보건, 위생과 관련된 수입금지 및 사전허가 이외의 특기할만한 수입규제 사례는 없음: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알코올, 음란서적, 마약, 무기 수입금지, 한국의 N사 라면에 돼지성분 함유를 이유로 잠정수입금지, 최근 기꼬만 간장에 알코올 성분 함유를 이유로 한 잠정유통 금지

< 선적전 검사제도 >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 사우디로 수출하려면 사우디 표준청의 인증서를 부착. 1996년 1월부터 기존 제도를 다소 변경, 실행함에 따라 외국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멘트, 페인트, 램프, 전화기, 오븐,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타이어, 금 및 그 제품 등 76개 품목은 대 사우디 수출업자가 수출 전에 사우디 표준청(SASO)의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수출 국내 지정 검사대행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SASO 인증서를 부착.

- 한국에는 KIMSCO를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대 사우디 수출품목 중 76가지 품목군을 검사 대행

□ 관세 및 부가가치세

○ 관세

- 정부 조세수입의 증대와 수입억제를 위해 최저 관세율을 7%에서 12%로 인상. 그러나 공업용 원자재, 의약품, 기초식품류, 서류류, 정밀금속류 등은 여전히 무관세로 통관.

- 자국산업 보호측면에서 자국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품목이 전체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이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최고 관세율인 20%에 이름

- 1981년 11월 체결되어 1983. 3. 1 자로 발효한 GCC 통합경제협정에 따라, 1983.9. 1.부터 GCC 회원국간에 관세를 철폐함과 동시에, 지역에 수입되는 외국상품에 대하여는 최소 4%부터 최고 20%까지의 수입관세를 부과기로 되어 있음

- 관세 분류는 HS방식을 채택하고 과세기준은 대부분이 종가세이며 1988년 1월부터 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하여는 12%, 시멘트 등 자국생산능력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20%의 고율관세를 부과. 반면에 쌀, 설탕 등 국민식생활에 직결되는 식품류에 대하여는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4년 4월 철강에 대하여는 수입촉진을 위해 관세를 5%로 인하함

○ 부가가치세

국가	기업	개인(분)	개인(최대)	급여 세금(보통 과세 소득을 감소)	VAT/GST/ 판매	기초세금조항
사우디 아라비아	20 % (오일 / 가스 이상)	0% (외국인) <u>Zakat</u> (원주민)	0%(외국인) Zakat(원주민)	11% 사회 보장	0%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무

자료 조사일: 2013년 3월 7일

□ 원산지 규정

- 사우디 세관은 ‘각각의 품목상에 원산지가 반드시 각인 또는 제거 불능한 스티커 상에 언급되어야 하며, 상품포장 BOX 등 에도 반드시 인쇄되어야 한다’ 라는 엄격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발표함. 원산지 증명서 역시 일치하는 세부항목이 언급 되어야 함

- 만약 어떠한 유럽 국가에서 물품이 선적 된다면, “European Union” 대신에 정확한 생산/제조 국가의 원산지가 원산지 증명서 등에 명시되어야 함. 만약 하나의 포장/박스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이 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물품은 각각의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규정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도착된 물품에 대하여 Saudi 세관에서 도착 후 더 이상 물품에 원산지를 붙이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그러한 화물은 하주 또는 인수인의 비용으로 즉시 선적지로 재수출 되어야 함

-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제다항 (Jeddah), 다만항 (Dammam) 그리고 리야드항 (Riyadh)에 도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발효됨

- Saudi 세관의 위의 강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수입자는 벌금, 체선료, 구금비용, 초과인력 또는 그와 관련된 인력비용 등에 대해 책임을 전가 할 것임. 수출자는 선적 전에 수입자와 충분한 사전 검토와 확인이 요구 됨

□ 라벨링 규정

○ 일반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 규정

- 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Gulf Standard 9/1995로 포장된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아랍어로 제작되거나, 아랍어 번역본을 부착하고 있어야 함

- 기본적으로 라벨은 제품 이름, 포장자 이름, 원산지, 제조 국가, 원료 목록, 소비자 준수사항, 생산일, 유통기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